

# 도시-어촌교류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어촌 교류촉진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도시민, 어린이 등의 어촌체험 기회 제공으로 어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도시와 어촌 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한다.

1. 어촌과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촉진
2. 어린이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어촌사랑 홈페이지 운영
4. 어촌사랑 교류활동 등 홍보

**제3조(소요예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하되, 일금이억오천만원(₩250,000,000)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 ① 위탁사업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되, 도시-어촌 교류촉진 관련 지속적인 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2023. 1. 1.부터 계약체결일 이전에 수행된 업무도 이 계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 제2장 사업의 집행

**제5조(사업비 신청 및 결정)** ① 대표이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사업비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성과지표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의 지급을 결정한다.

**제6조(자금집행)** ① 대표이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지급결정서를 통지받으면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선급금(개산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역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로 사업비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 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업 예산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대표이사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사업 수행방법)** 대표이사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 기술 또는 자격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업을 종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② 제1항의 민간위탁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각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의 심사)** 장관은 대표이사로부터 민간위탁사업 실적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실적이 관련 법령, 계약에 따른 사업 비의 신청내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대표이사는 성과지표의 달성을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주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로 자체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장 회계 등

**제12조(회계규칙)** 대표이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구분경리)** 대표이사는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

**제14조(발생이자의 반납 등)** ① 사업비 지급 이후 발생한 이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의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위탁대가 지급)** 위탁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총 집행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장관과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16조(계약해약)** ①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각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해양수산부의 예산사정, 그 밖의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의 사정으로 장관과 대표이사가 계약을 해약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4. 대표이사가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대표이사가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 ② 대표이사는 계약의 해약으로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업수행방법을 명시하고 위탁대상업무 편람을 작성해야 하며, 계약해약일로부터 3개월 까지 계속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약 등에 따른 정산)** 대표이사는 계약이 해약(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장관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사업비 잔액은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계약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 유출에 의한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제19조(손해배상)** 대표이사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장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는 장관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0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시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장관의 소유로 하며, 사업비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장관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제22조(기록자료 보존)** ① 대표이사는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조사자료,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장관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장관과 대표이사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세부시행지침의 시달) 장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제25조(중대재해 예방대책) ① 대표이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4. 안전보건교육 계획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6.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7.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 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 유해성 평가 등)의 준수현황
9.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계획서 등 제출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는 재해예방을 위해 제출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장관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예산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3년 3 월 29 일

업무 위탁자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업무 수탁자

수 산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대 표 이 사

